

# 한국항공대학교 올진비행 훈련원 비정상 상황 발생시 절차 및 보고 절차 재강조

부산지방항공청, 올진비행교육원(본원), 올진비행훈련원 관련 지침 강조 사항

## 1. 비정상 상황이란?

- 계획된 훈련임무에서 벗어나는 상황 발생 또는 훈련임무를 조기 종료하고 복귀(RTB)
- 항공기 운항중 기체 결함 또는 조종사 신체적 이상 발생

## 2. 상황 처리 절차

- 정비팀 통보 및 탑재일지(**LOGBOOK**) 기록
  - 필요시 현장 보존 및 사진자료 확보
- **SMS**안전담당자에게 통보
  - 내용의 경중을 막론하고 최대한 신속히 알릴 것
  - 안전담당자 업무 부재시 비행교육팀장에게 알림
- 탑재일지 기록시 **자율보고(FTC앱)**에 보고(본원 지침) : 당일 보고 원칙
- 의무보고/자율보고/기타 여부에 대해서는 안전담당자가 판단하여 결재라인을 통해 이후 처리절차 진행

## 3. 기타

- 교관 뿐만 아니라 훈련생, 정비사 등 누구나 보고 가능
- 훈련생도 **PIC**로 logging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
- '훈련생이 비정상 상황 발생시 보고할 수 있는가'도 담당교관이 평가해야하는 아이tem
- 교관 2명 동승 비행의 경우에도 긴장도를 늦추지 말 것
- 의무보고의 범위에 대해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있을 것

## 4. 주요 의무보고 사항

- 활주로 이탈(RE), 활주로 침범(RI)
- 비행 중 엔진 정지 또는 출력감소
- 고도, 경로 이탈, 관제 분리치 미확보
- 근접조우(공중 충돌 포함)
- 항공기 지상 충돌
- 통신장애(통신 두절 포함)
- 조류 충돌
- 기타 운항 중 결함 발생

## 5. 참고

- <사례전파> 비정상상황 기록 누락 및 미보고(다음 장 참조)
- 항공기준사고의 범위(제9조 관련 [별표2])
-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의 범위(제134조 관련 [별표 20의2])
- 자율보고 앱 설치 주소(링크 클릭)



한국항공대학교 울진비행 훈련원 비정상 상황 발생시 절차 및 보고  
철저 재강조

- 자율보고와 달리 의무보고는 ‘즉시’(일부 항목은 72시간/96시간 이내)  
반드시 보고